

정 치 관 계 법 개 정 의 건

(선거 · 정당 · 정치자금)

2003.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I. 제출배경	1
II. 작성방향	3
III. 개정의견 주요내용	9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

1.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 보장 / 9
2. 질서유지 및 선거비용 과다 억제를 위한 제한·금지 / 10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정성 보장

1. 인터넷게시판 실명인증제의 도입 / 17
2. 위법 게시물의 삭제 강화 및 무차별 전송 방지 / 18

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설치·운영 / 18

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 19

공영에 의한 선거운동 보장

1. 홍보물에 의한 선거운동 / 19

2. 합동연설회 / 20

3.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21

미디어 선거운동의 활성화

1. 텔레비전방송 토론회의 활성화 / 22

2. 정당의 정강·정책홍보를 위한 방송연설 / 23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기회 확대

1.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 / 24

2. 선거일전 투표제도의 도입 / 26

3. 유권자의 실질적인 투표참여 보장 / 26

4. 선거연령의 하향조정 / 27

비방·허위사실공표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근절

1. 법정홍보물 등에서의 비방·허위사실공표 차단 / 27
2. 연고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28

선거비용 및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 확보

1. 선거비용 제한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 강화 / 29
2.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 강화 / 31
3.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권 강화 / 32
4. 위법행위 제재의 실효성 확보 / 34

각종 제한·금지사항 조정

1. 입후보 제한의 합리적 조정 / 36
2. 의정활동보고 방법·주체의 제한 / 37
3.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제한기간 단축 / 37
4. 투표소 출구조사 거리제한 폐지 / 38

선거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

1. 기탁금 반환 차등화 / 38
2.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법 개선 / 39
3. 선거비용 보전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 39
4. 선거인명부작성권자 변경 / 39
5.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조정 / 39
6. 투·개표사무원 위촉범위 확대 / 40
7. 선거부정감시단의 신축적 운영 및 자격요건 완화 / 40
8.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당선인결정 방법 개선 / 41
9. 지방의원보궐선거 실시 확대 / 41
10. 보궐선거등의 실시시기 조정 / 41

② 정당법

정당의 구조개혁

1. 중앙당의 조직 개선 / 41

2. 지구당의 사당화 방지 / 42

인터넷 정당 활동의 활성화

1. 인터넷을 통한 입당 및 탈당의 허용 / 44
2. 대의기관 결의시 인터넷 투표 허용 / 44
3. 정당활동의 인터넷 공개 / 45

민주적 당내경선의 활성화 및 지원 강화

1. 비당원인 선거구민의 참여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 / 45
2. 대통령후보자 당내경선의 위탁관리 / 45
3. 정당의 당내경선 등의 공정성 보장장치 마련 / 46
4.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절차의 민주성 확보 / 47

③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 실소요액의 원활한 조달 지원

1. 당내경선 후보자 등의 후원회 허용 / 48
2. 정치자금 기탁 촉진 / 49

3. 인터넷 이용 등 모금방법의 대폭 허용 / 49
4. 정치자금 모금·기부 관련 홍보방법 다양화 / 50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1.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 / 50
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예금계좌 사용 의무화 / 51
3.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신용카드 등 사용 / 51
4.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 52
5.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시 국가회계처리 절차 준용 / 52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1. 당비납부 실적에 따른 보조금 배분 및 구·시·군당 지급 / 53
2. 후보자에게 지원한 보조금의 구분 정리 / 53
3. 후보자에 교부·지원한 보조금 잔액의 정당반납 / 53
4.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제 확대 / 54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1. 불법 정치자금 수수시 공무담임권 등 제한 / 54
2.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조사권 강화 / 54
3.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벌칙 강화 / 55
4. 정당재정의 자율통제기능 강화 / 55

I. 제 출 배 경

- 1994년 이른바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이래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번도 거르지 않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함)이 손질되어 왔으며, 선거문화 역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계속 발전해 왔는바, 그 결과 우리의 선거사를 통하여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던 금권·관권선거의 시비가 거의 사라지고, 조직을 이용한 청중동원이 현저히 퇴조한 반면, TV 등 언론을 이용한 대담·토론과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소규모 거리연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인터넷이 새로운 선거운동 매체로서 주목을 받는 등 선거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정당·후보자는 물론 많은 국민으로부터 현행 제도는 비현실적인 규제 중심의 법 규정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참여를 제약하는 구시대적인 경직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인 정당구조와 투명하지 못한 정치자금의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정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에 우리 위원회는

-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규제중심의 선거제도의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선거운동의 완전 자유화를 대원칙으로 삼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정 경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두어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비용을 보다 엄정하게 제한하여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고 당내민주화를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며,

-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정치에 있어서 부정과 부패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 땅에 선진 정치문화를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것임.

Ⅱ. 작 성 방 향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사전선거운동의 원천 금지, 선거운동방법의 광범위한 제한 등 반세기에 걸쳐 우리 선거사의 기본 골격이 되어 왔던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모든 선거운동을 완전 자유화하되,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참여·창의가 보장되는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이 발현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선거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첫째, 사전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는 300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자는 신고한 때부터 인쇄물·시설물·공개장소 방문·전화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과열을 막기 위하여 돈이 드는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방법·수량·비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였음.

※ 사전선거운동은 등록전선거비용제한액을 통하여 규제하고,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하여 일정액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둘째, 선거법상의 광범위한 각종 규제 조항을 철폐하여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질서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주체·방법별로 제한하도록 하였음.

- ▶ 옥외집회, 비공개장소의 집회 등 세과사용 청중동원이나 금품·향응제공 등의 우려가 있는 집회와 향우회 등 연고를 이용한 집회는 제한하도록 함.
- ▶ 모든 인쇄물(명함 제외)은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다음 배부하도록 함.
- ▶ 현수막 등 시설물은 읍·면·동마다 1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 인터넷게시판 실명인증제 등 공정성 보장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셋째, 선거운동의 완전 자유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담으로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고, 선거벽보게시판을 설치하여 후보자가 선거벽보를 첩부하도록 하며, 정책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당의 TV정책토론회, 후보자 TV대담·토론회 등 미디어를 이용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직선거 정보에 관한 인터넷종합사이트를 구축해 선거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사항 등 다양한 홍보자료 뿐만 아니라 당선인의 공약이행상황, 의정활동상황,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는 언제든지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를 통하여 그가 지지하는 정당·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정보 자유시장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넷째,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확대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전선거비용제한액과 선거비용제한액을 두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그 범위안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카드·수표·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수입·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완전 공개함으로써 누구든지 자유롭게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의 경로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였음.

다섯째, 선거참여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거주자도 부재자신고를 한 후 우편투표를 통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선거일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투표참여도를 높이도록 하였음.

여섯째, 선거벽보·선거공보, 광고, 합동연설·TV합동방송연설 등 법정홍보물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허위사실공표, 비방 등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역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온 지연·혈연 등 연고관계를 분석하여 공표·보도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선거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축제로 터잡을 수 있도록 하였음.

② 정당법

첫째, 정당의 당내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사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대의기관은 당원 직선제를 통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지구당은 구·시·군당으로 전환하며, 국회의원등은 구·시·군당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구·시·군당은 3인이상의 공동대표제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서 정당이 1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폐해를 시정하고 당원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였음.

둘째, 인터넷을 통한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원의 입당과 탈당 및 대의기관의 결의를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정책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셋째, 정당의 당내경선에 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 선거구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확정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도록 하며, 대통령후보자의 당내경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배분대상정당에 한하여 당해 정당이 원할 경우 정당의 부담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첫째, 당내경선비용이나 선거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국회의원 및 국회의원후보자에 한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여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모금 등 정치자금 모금과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둘째,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날부터 선거비용외에 의정 활동비용, 정당활동비용, 애·경사비용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이 선거비용과 정치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총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단일의 예금계좌와 수표 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였음.

셋째, 국고보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하고, 구·시·군당에도 보조금을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보자에게 기탁금 등 보조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당에 반납하도록 하였음.

넷째,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법과 같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사범에 대하여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와 함께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권, 질문·조사권, 동행명령권 등 정치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Ⅲ. 개정의견 주요내용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

1.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 보장

-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는 300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자는 그때부터 본인에 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와 일반 유권자는 현행과 같이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됨.
 - ※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는 후원회(또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후보자는 사전에 방법·비용·거래처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등록전 선거비용제한액이나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함.

2. 질서유지 및 선거비용 과다 억제를 위한 제한·금지

가. 선거운동방법

(1)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가) 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 자 및 집회의 제한

- 선거기간전에는 누구든지(예비후보자도 포함됨)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

※ 예비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또는 타인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여 구두로 지지 호소하는 행위는 가능

- 선거기간중에는 정당(대통령선거에 한함)과 후보자(비례대표 제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집회장소·일시·대상 등을 사전에 신고하고 옥내에서만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개최자는 당해 장소에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나) 집회의 고지

- 집회개최자가 집회 개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고지방법 등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그 고지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도록 함.

- 확성장치는 거리연설용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고지벽보는 집회개최 2일전부터 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종료후 즉시 철거하도록 함.

(2) 자동차·확성장치, 녹음·녹화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옥내연설회장소, 후보자의 거리연설장소, 언론기관·인터넷언론사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장, 선거기간중 후원회의 모금집회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 녹음·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후보자와 그 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연설에 이용하는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수량은 선거별로 제한하도록 함.

(3) 인쇄물등에 의한 선거운동

정당(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비례대표 제외)가 문서·도화 기타 인쇄물, 녹음·녹화물, 전산자료복사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거래처·배부대상·수량·비용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후보자가 직접 배부하는 선거운동용 명함외에는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을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인증을 받은 후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사무관계자가 신고후 사용하는 선거운동용 자동차,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사무소의 옥상이나 외벽면을 제외하고는 인쇄물을 첩부·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4)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정당(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비례대표 제외)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도록 함.
- 정당(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비례대표 제외)는 종류의 제한없이 읍·면·동마다 1개를 초과하여 시설물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준하는 규제를 받도록 하며, 미신고·수량초과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함.

(5)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정당(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한함)·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및 방송연설을 할 수 없도록 함.
- 정당(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한함)·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가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및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매체의 종류·일시·비용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함.
-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방송의 보도·토론 또는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연속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고정 참여자로 출연할 수 없도록 함.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는 언론매체 등에 광고모델로 출연할 수 없도록 함.

(6)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예비후보자 제외)와 그 가족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풍선·수기 등 소품과 어깨띠·표찰·배지·상징물을 두르거나 달거나 지니고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풍선·수기(手旗) 등 일회성 소품과 배지·상징물을 제작·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내의 소품이어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한 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사무소, 옥내집회·거리연설 및 후원회 개최 장소에 한하여 소품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선거운동주체

(1)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기구에 들 수 있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수와 수당·실비의 금액은 현행과 같이 제한을 두되,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함.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명확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공단
- 정치활동 또는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소속 회원 또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
- 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

다. 선거운동기구

-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외에는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별로 일정수이내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제한·금지되는 사항

- 공무원 등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언론기관 경영·관리자나 편집·취재·집필·보도자의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보도, 사실의 왜곡보도 또는 논평 행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출판기념회의 개최
- 선거기간중에 특별한 사유 없는 반상회의 개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전화, 거리연설, 집회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 집회의 방해 또는 집회장에서의 소란행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부행위
- 주례 행위, 찬조금 및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
- 선거일후 답례 행위
- 호별방문에 이르는 당원모집 행위

○ 그 외 현행 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 주요 선거범죄

※ 벽보 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투표의 비밀침해죄,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투표함등에 관한 죄,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사위등재·허위날인죄, 사위투표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 선거범죄선동죄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정성 보장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전·중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 언론의 불공정 보도로 인한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1. 인터넷게시판 실명인증제의 도입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및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자가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는 30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치·시사 등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화방·게시판을 운영하는 때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실명인증 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되, 이를 위반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위법 게시물의 삭제 강화 및 무차별 전송 방지

-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요청을 받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즉시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무차별 e-mail 전송으로부터 선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준용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준용

: 전송자의 연락처 등 표시, 수신거부의사, 선거정보 표시 등

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설치·운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는 30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30인

이내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 인터넷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하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이라 함)이 추천하는 각 1인과, 학계·대한변호사협회·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도록 함.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가 방송·보도한 선거기사와 관련하여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로부터 공정성 여부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의하고, 반론보도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지체 없이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반론보도할 수 있도록 함.

공영에 의한 선거운동 보장

1. 홍보물에 의한 선거운동

가. 선거벽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적정한 장소에 선거벽보게시판을 설치하고, 정당(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과 후보자는 일정 규격 범위내에서 작성한 선거벽보를 지정된 면에 직접 첩부하도록 함.

나. 선거공보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배부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이를 발송하도록 함.

※ 현행의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은 선거공보로 통합

2. 합동연설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마다 2회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도록 함.

3.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TV합동방송연설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공영방송사가 그의 부담으로 방송하도록 하되, 다른 방송사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선거에 관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구축·운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정보에 관한 인터넷포털사이트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서는 물론 평상시에도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공약사항과 당선인의 공약이행사항, 의정활동상황,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반 선거구민은 누구나 모든 후보자 및 정치인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 당해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개인은 일정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함.

미디어 선거운동의 활성화

1. 텔레비전방송 토론회의 활성화

가. 선거기간전 정당의 정책토론회 개최 의무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최근 4년간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과 국회의석을 5석이상 가진 정당(이하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등”이라 함)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월 1회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영방송사로 하여금 이를 중계하도록 하되, 다른 방송사도 그의 부담으로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선거기간중 텔레비전방송 대담·토론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2회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영방송사로 하여금 이를 중계하도록 하되, 다른 방송사도 그의 부담으로 중

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도 주관하도록 함.

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운영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전에는 정책토론회를, 선거기간중에는 합동방송연설회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는 300일)까지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과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인과 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앙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도록 함.

2. 정당의 정강·정책홍보를 위한 방송연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는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등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함.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기회 확대

1. 국외부재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

가. 대상선거 및 부재자신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외교관, 유학생 등 선거권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50일부터 25일까지 재외공관장,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의 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 기명에 의한 방법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선거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25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다. 투표용지 송부

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받아 투표용지 및 투표안내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현지 우편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송부하도록 함.

라. 투표용지 회송 및 개표

국외부재자는 우송된 기명식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 또는 정당의 명칭을 직접 기재하여 이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우편 송부하도록 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개표하도록 함.

마. 투표권 행사방법 등 홍보

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공관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의 대상자, 신고방법, 신고기간, 투표절차와 방법 기타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 신문광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함.

2. 선거일전 투표제도의 도입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부재자신고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업무상의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선거인명부확정일이후의 토요일·일요일 양일간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3. 유권자의 실질적인 투표참여 보장

가. 부재자신고 절차의 간소화

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중 거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선거인에 대하여는 구·시·군의 장이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표시한 부재자신고서 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송부받은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외딴섬 거주자의 거소투표 허용

등대지기 등 현행 순회투표 대상인 외딴섬 거주자들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 수용시설의 부재자 기표소 설치 의무화

부재자신고를 한 장애인을 3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복지시설 안에 부재자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당해 기표 장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후보자가 추천하는 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함.

4. 선거연령의 하향조정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현행의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함.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근절

1. 법정홍보물 등에서의 비방·허위사실공표 차단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법정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보전하는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다른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함.

2. 연고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가. 출신지역별 · 씨족별 유권자분포율 공표 제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사이에는 선거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방송 · 통신 · 신문 · 잡지 기타의 간행물 및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보도 또는 공표를 하는 경우 출신지역별 또는 씨족별 선거구민의 수나 그 분포비율을 밝힐 수 없도록 함.

나. 지역연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방송연설, 방송광고 · 신문광고, 선거벽보 · 선거공보 기타의 홍보물을 이용하여 후보자나 그의 가족 또는 정당 대표자의 지역연고(원적지 · 본적지 · 출생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 · 씨족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거나 선거구민의 지역연고 · 출신학교 또는 씨족에 관한 사항을 이용하여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를 호소할 수 없도록 함.

다. 지역주의 선거풍토 지양을 위한 홍보방송

방송사는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나 방송연설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프로그램의 방송전·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역주의 선거풍토를 지양하자는 내용 등의 홍보방송을 실시하도록 함.

선거비용 및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 확보

1. 선거비용 제한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 강화

선거운동의 완전 자유화로 인한 후보자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경제력 차이에 의한 선거운동 기회 불균등을 해소하며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은 제한액 범위안에서 지출하도록 함.

가. 등록전 선거비용제한액과 선거비용제한액의 구분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당해 선거구의 인구수 및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의 등록전선거비용제한액과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나. 선거비용제한액의 초과지출에 대한 제재

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포함)와 후보자(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

소의 회계책임자 포함)가 공고한 등록전 선거비용제한액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등록전 선거비용제한액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도록 함.

다. 선거사무장 등으로 인한 당선무효사유 확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거비용제한액의 1/3이상을 지출한 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또는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허위기재, 수입·지출내역의 누락 또는 위·변조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후보자(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함)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함.

라.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교통편의 · 음식물 제공 금지

정당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집회를 하는 때에는 일체의 교통편의나 다과 ·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2.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성 강화

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공개

-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비용을 수입 · 지출할 수 있음.
-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는 신고한 날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선거비용 수입 ·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후보자등록 마감후 5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 및 시 · 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0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선거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등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 의무화

선거비용은 신용카드 · 수표 또는 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

법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총액을 말함)이하로서 교통비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 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이내에서 지출하도록 함.

다.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와 거래업체 등에게 선거비용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니더라도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예금계좌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당해 예금계좌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권 강화

가. 통신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기타 통신을 이용한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선거비용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이용자 식별부호를 포함함)·주소·주민등록번호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함.

나. 증거물품 수거권 확대

금품·향응제공과 관련된 선거범죄 외에 그 밖의 선거범죄와 관련하여서도 범죄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함.

다. 선거범죄혐의자에 대한 동행명령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위원회를 제외함)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현행범인등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라.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의 보호

- 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에 의하여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범죄사실을 신고(고소·고발 포함)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에 가담하였더라도 그 형을 면제하고, 소속 기관·단체는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신원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에 선거범죄에 관한 사항을 신고·제보한 자에 대하여는 조사·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최대한 그 신분이나 인적사항의 노출을 방지하도록 함.

4. 위법행위 제재의 실효성 확보

가. 위법행위자 고발사실 공표 등

-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일까지 선거범죄의 혐의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정당의 당직자 등을 고발한 때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고발한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되,
- 위반행위자는 고발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변명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며,
-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을 고발하고 이를 공표한 때에는 해당자의 변명을 포함하여 당해 선거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기관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함.

나. 당선무효시 기탁금과 선거비용 환수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나 임기 중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자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보전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환수하도록 함.
-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행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않도록 함.

다. 선거일후 금품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선거일후에 이루어진 선거운동의 대가수수나 답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행의 선거일 후부터 6월까지에서 그 행위시부터 6월까지로 연장하도록 함.

라. 양벌 규정의 확대 적용

정당이나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함)의 대표자·간부 또는 상근 유급직원이 단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 외에 당해 단체등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마. 경미한 선거범죄의 과태료 전환

인적사항 미신고, 비용분담내역 미신고, 표지 미부착 자동차 사용 등 경미한 위법행위는 대폭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함.

바. 제한적 궐석재판제도 도입

선거범죄와 관련된 피고인이 제1심 재판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공판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공판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한 공판기일에 결심된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각종 제한·금지사항 조정

1. 입후보 제한의 합리적 조정

가. 재·보궐선거의 입후보 제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 또는 사직하거나 퇴직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나. 입후보제한 관련 규정의 합리적 보완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후보자등록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직을 사직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한하여 그 직을 가지고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2. 의정활동보고 방법·주체의 제한

의정활동보고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년부터는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의정활동보고의 금지기간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확대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은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의정보고서 작성·배부 : 분기별로 1종 1회
- 의정보고회 개최 : 분기별로 읍·면·동수에 상당하는 회수이내

3.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제한기간 단축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기간을 현행의 선거기간

중에서 부재자투표가 개시되는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단축하도록 함.

4. 투표소 출구조사 거리제한 폐지

언론기관의 선거종료후 당선인 예측발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소 출구조사에 관한 300m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유권자의 투표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선거절차사무의 합리적 개선

1. 기탁금 반환 차등화

공직선거에 있어서 기탁금 반환을 차등화하여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때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때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을 득표한 때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후보자에게 반환하여 주도록 하되, 100분의 5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

금은 별도로 설치하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2.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법 개선

선거운동의 자유화로 비목별 선거비용의 산출이 어려우므로 선거별로 기준금액을 정하고 이에 당해 선거구의 인구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읍·면·동수를 함께 고려하도록 함.

3. 선거비용 보전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선거결과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하되, 선거운동의 자유화로 비목별 보전비용의 산출이 어려우므로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득표수)를 연계하여 보전비용상한액을 정하고, 그 금액과 후보자가 신고한 실제지출비용을 대조하여 적은 금액을 보전하도록 함.

4. 선거인명부작성권자 변경

선거인명부작성권자를 종전의 구·시·읍·면의 장에서 구·시·군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함.

5.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조정

구·시·군당대표자 또는 당내경선의 후보자가 된 자가 정당법

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가 되거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은 무효로 하도록 함.

6. 투·개표사무원 위촉범위 확대

공무원·교직원 등의 투·개표사무종사 기피에 따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직원·금융기관의 직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투·개표사무원의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자원봉사자등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되, 위촉된 투·개표사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무를 기피 또는 유기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7. 선거부정감시단의 신축적 운영 및 자격요건 완화

선거운동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능한 감시단원의 확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 임·직원, 민방위대원, 재향군인회원 등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의 구성원도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8.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당선인결정 방법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이후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같이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9. 지방의원보궐선거 실시 확대

지방의회의 궐원된 의원의 수가 의원정수의 4분의 1미만인 경우에도 보궐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10. 보궐선거등의 실시시기 조정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함.

② 정 당 법

정당의 구조개혁

1. 중앙당의 조직 개선

가. 대의기관의 구성

중앙당과 구·시·군당 및 시·도지부의 대의기관의 구성원 중 4/5이상은 당원 직선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함.

나. 정책정당으로의 발전 지원

국가는 중앙당의 정책연구기관의 운영(국회교섭단체구성정당에 한함), 당원연수 기타 정당발전에 관한 연구·학술활동 등 정당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당 유급사무직원수 조정

중앙당에 들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정책개발연구원을 제외함)수를 현행의 1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축소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180

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의 사이에는 2배(대통령선거는 3배)를 둘 수 있도록 함.

2. 지구당의 사당화 방지

가. 구·시·군당 체제 개편

현행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구당을 대신하여 구·시·군당 체제로 전면 개편하되, 이 경우에 하나의 구·시·군이 여러 개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구·시·군당만을 두도록 함.

나. 공동대표제 도입

구·시·군당에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에서 선출하는 3인 이상의 대표자를 두도록 하고, 대표자는 공동으로 구·시·군당을 대표하도록 함.

다. 선출직 공직자 등의 당대표자 겸직 제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선거의 후보자로 선출 또는 추천된 자와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비후보자는 구·시·군당의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구·시·군당대표자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며,

그 이전에 당내경선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당내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라. 국회의원 등의 정당 운영경비 부담 경감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로 된 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당비·특별당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구·시·군당 운영경비의 1/3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

마. 정당의 경비사용 제한

정당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에는 읍·면·동 책임자 등 확대당직자 또는 일반당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비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기부행위제한위반죄로 처벌함과 병행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정치자금법”이라 함) 제17조(보조금의 계상)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다음 연도의 보조금에서 위반 금액의 2배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

인터넷 정당 활동의 활성화

1. 인터넷을 통한 입당 및 탈당의 허용

현행의 입당방법(서명날인한 입당원서의 제출) 외에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입당과 탈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본인확인 방법은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도록 함.

2. 대의기관 결의시 인터넷 투표 허용

당원총회나 대의기관의 결의는 인터넷을 통한 투표로서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해산·합당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

3. 정당 활동의 인터넷 공개

국고보조금배분대상정당은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강·정책, 당헌·당규,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공개하도록 함.

민주적 당내경선의 활성화 및 지원강화

1. 비당원인 선거구민의 참여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

당내경선시 공직선거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는 당원 이외에 비당원인 선거구민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당적 이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당이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정당은 당해 당부의 대의기관의 수임기관이나 상급당부에서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함.

2. 대통령후보자 당내경선의 위탁관리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 있어 국고보조금배분대상정당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사무와 투·개표사무를 위탁관리하되, 그 경비는 당해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며,

당내경선기간이 다른 공직선거의 실시기간과 중첩되는 경우에는 정당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는 당내경선에 한하여 정당법상 당내경선규정을 위반한 사범에 대하여는 선거범죄의 조사권(선거법 제272조의2)에 준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요구 및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정당의 당내경선 등의 공정성 보장 장치 마련

당내경선 및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 선거의 자유방해, 매수 및 이해유도, 금품제공,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두어 처벌하도록 하고,

당내경선에 후보자등록을 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4.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 절차의 민주성 확보

공직선거에 있어서 당내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주적 선거절차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

③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 실소요액의 원활한 조달 지원

1. 당내경선 후보자 등의 후원회 허용

대통령·국회의원(비례대표국회의원 제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내경선에서 당선된 자를 제외함)는 후원회를 통하여, 지방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제외)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등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예비후보자 신고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때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며,

모금상한액은 후보자등이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함.

- 후보자등의 정치자금 모금한도액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선거비용제한액과 선거비용제한액의 합계액을 모금할 수 있고,
- 예비후보자가 아니었던 자가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으며,

- 당내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음.

2. 정치자금의 기탁촉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주요 경제단체들과 협의하여 정치자금의 기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탁된 정치자금은 중앙당에 50%, 국회의원에 25%, 구·시·군당에 25%를 각각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고 정치자금 수요처에 적정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함.

3. 신용카드 등 모금방법의 대폭 허용

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하 “후원회등”이라 함)는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개인용컴퓨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자유로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정치자금 모금집회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의 후원회는 시·도별 각 1회씩 총 16회(선거기간중에는 1회에 한함),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등의 후원회는 총 3회(선거기간중에는 1회에 한함)이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4. 정치자금 모금·기부 관련 홍보방법 다양화

신문·잡지광고, 안내장 배부, 현수막 게시, 입간판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회 계좌번호를 안내하거나 정치자금 기부를 호소하는 등 자유로이 고지·홍보할 수 있도록 함.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1. 후보자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

가. 모든 정치자금의 단일 창구에 의한 통합관리

후보자등(국회의원을 포함함)이 선거관련비용 기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입·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 다음 그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모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후보자등이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돈이 본인의 재산인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수입·지출하도록 하며, 그 내역을 회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

또한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회계장부·예금통장·신용카드 등을 인계·인수하도록 함.

나. 후보자등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후보자등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날부터 이루어진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내역과 다음 각호의 지출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이 경우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활동비용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회계보고를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등 선거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선거법에 의한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 의정활동보고 기타 직무활동비용
- 당비납부 등 정당활동비용
-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정치활동비용

2.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예금계좌 사용 의무화

정당·후원회·후보자등의 정치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하나의 예금계좌만을 통해서 수입·지출하도록 함.

3. 정치자금 수입·지출시 수표·신용카드 등 사용

누구든지 1회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때에는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 지로, 우편환, 예금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

로만 하도록 하고,

회계책임자가 1회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때에도 수표 등 위의 방법으로만 지출하도록 하되,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지출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4.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비납부자와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을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5.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시 국가회계처리 절차 준용

정당은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출결의서, 구입(지출)품의서에 관한 사항 등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당규에 규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정당이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출)품의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고보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1. 당비납부 실적에 따른 보조금 배분 및 구·시·군당 지급

보조금의 계상은 현행대로 하되, 경상보조금은 당해 정당의 전년도 당비납부총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정당에 배분되는 보조금의 50%는 중앙당에, 나머지 50%는 당비납부실적 비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당에 지급하도록 함.

2. 후보자등에게 지원한 보조금의 구분 경리

후보자등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일반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

3. 후보자등에게 지원한 보조금 잔액의 정당반환

정당이 보조금으로 후보자등에게 기탁금·선거비용 등의 경비를 지원한 경우,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거나 보조금에서 기탁금 등을 납부한 후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을 받은 때에는 보조금

을 정당에 반환하도록 함.

4.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제 확대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를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대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함.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확보

1. 불법 정치자금 수수시 공무담임권 등 제한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기부행위 등 주요 정치자금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5년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도록 함.

2.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조사권 강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위법한 수입·지출에 관한 사

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고발·수사의뢰·경고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벌칙 강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하거나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며,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의 모금을 위임받은 자가 정치자금을 모금한 경우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48시간 이내에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함.

4. 정당재정의 자율통제기능 강화

중앙당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의원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분기마다 예금계좌의 잔액과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그 내역을 확인·검사하고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며 회계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함.